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5. 10 선고 2021가단11908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4. 19.

판 결 선 고 2022. 5. 10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30,296,740원 및 그 중 15,934,005원에 대하여 2021. 4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제1항, 제5항 내지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2/60 지분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/45 지분,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/15 지분,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/30 지분, 별지 목록 제11항 내지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200/7365 지분에 관하여,
 - 가. 피고들 사이에 2018. 3. 28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취소한다.
 - 나. 피고 C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가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4항 내지 제16항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2018. 3. 2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4,466,66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 - 나. 피고 C는 원고에게 14,466,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

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판사 노진영

별지